#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88

발의연월일: 2024. 8. 13.

발 의 자:조 국·김준형·강경숙

서왕진 • 이해민 • 차규근

김재원 • 정춘생 • 김선민

한창민・황 희・허성무

신장식 · 염태영 · 황운하

민병덕 • 정태호 • 문진석

박은정 의원(19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사자 등의 사망·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보통전공사상심 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재심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 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에 관하여 재심사기한 등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24년 7월 기준으로 동 위원회의 재심사·의결에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 등 보상 처리에 지연이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90일로 정하고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

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그유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등이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4조의4제6항 및 제7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의4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사 청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·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간 안에 재심사·의결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⑦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전사자등 및 그 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4조의4제6항 및 제7항의 개

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54조의4(전공사상 재심사	및	제54조의4(전공사상 재심사 및
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)	1	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) ①
~ ⑤ (생 략)		~ ⑤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	⑥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
		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사 청
		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
		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
		일 이내에 재심사·의결을 하여
		야 한다. 다만, 그 기간 안에
		재심사·의결을 하기 어려운 정
		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
		<u>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</u>
		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
		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<u> &lt;신 설&gt;</u>		⑦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
		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 기
		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
		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 기간이
		만료되기 7일 전까지 전사자등
		및 그 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한
		<u>다.</u>
<u>⑥</u> (생 략)		⑧ (현행 제6항과 같음)